##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0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 박균택·박지원·양부남

김태선 • 전현희 • 이기헌

서영교 • 박홍배 • 이성윤

김현정 · 황정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인수, 자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 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 루어지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기회 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 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ESG 경영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 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를 "이사는 회사의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

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 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

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
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	<u>가본점소재지나 인접</u>
集하여야 한다.	<u>한 곳에 소집하여야</u>
<u> &lt;신 설&gt;</u>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충실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u>주의로직무를</u>
<u>&lt;신 설&gt;</u>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
	<u>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
	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
	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u>&lt;신 설&gt;</u>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
	할 수 있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면) ① (생 략)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2
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	
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	
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 <u>사외이사의</u> 경우는 3	<u>사외이사 및 제542</u> 조의8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독립이사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3
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	
우에는 <u>사외이사</u> 등의 활동내	<u>독립이사</u>
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	
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 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u>배제할</u>수 없다.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3분의----독립이사 (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 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 ②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는</u> 제3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 6. (생략)
- 7. 그 밖에 <u>사외이사로서의</u>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u> 산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 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 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 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하기 위

<u>하 같다)</u>
독립이사는
② <u>독립이사는</u>
<u>.</u>
1. ~ 6. (현행과 같음)
7 <u>독립이사로서의</u>
③ <u>독립이</u>
<b>ለ}</b>
<u></u>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4
독립이사

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u>사외이사</u> 후보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는 <u>사외이사</u>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 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 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 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 시켜야 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생 저략)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⑤
독립
<u>이사</u> <u>독</u>
립이사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세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현
행과 같음)
(2)

원:	회는	- 제4	153	돈의2×	∄2항의	요
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	추어이	: 항	다.		

- 1. (생략)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u>사외이</u>
  사일 것
-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항의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가</u>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직을 상실한다.
-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 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의</u>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 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 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 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 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1. (현행과 같음)
2독립이
<u> 사일</u>
③
3
T =1.1.1.1.1
<u>독립이사가</u>
<b>4</b>
독립이사의
독립이사의
<del></del>
1. • 2. (현행과 같음)
세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한다.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u> 2명</u>
③ (현행과 같음)
<b>4</b>
<u>독립이사가</u>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⑧ (생 략) <u><신 설></u> \_\_\_\_\_\_.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 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 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 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 다.
-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신 설>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 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為) ①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為)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u>원</u>	은	직	무/	상	알	게	돈	]	정	보	로	서
외	부ㅇ	1	공	개.	되기	۲]	아	·니	힌	-	정	보
를	정	당	한	시	-유	없	(ه	ス	トフ	]	또	는
<u>제</u> [	3자	의	o]	익	을	우	히	- 0	]	이	용	하
여	서는	= -	o}1	] {	틴디	<b>-</b>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3	 	 

-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 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u>사</u> <u>외이사를</u> 선임하지 아니한 경 우
- 4. ~ 8. (생 략)
- ④ (생 략)

1	-
<u>독립이사</u>	-
2	-
<u>독립이사</u>	-
<u>독립이</u>	-
<u>X}</u>	
<u>독립이사</u>	
3 <u>독</u>	-
립이사를	
4.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